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36호 2011. 2. 16.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1-14호 구제역 2차 예방접종 실시 명령..... 1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62호 2010년도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2
- 정선군공고 제2011-63호 2011.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지원계획 공고..... 16
- 정선군공고 제2011-66호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공고..... 17
- 정선군공고 제2011-69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18
- 정선군공고 제2011-74호 2011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계획..... 22
- 정선군공고 제2011-75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적발통보, 고지, 독촉,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4
- 정선군공고 제2011-76호 2011년도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7
- 정선군공고 제2011-80호 정선군 지방세입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8
- 정선군공고 제2011-81호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4
- 정선군공고 제2011-84호 분묘개장공고(1차)..... 39
- 정선군공고 제2011-85호 공시송달공고..... 42
- 정선군공고 제2011-86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원」 모집 공고..... 44
- 정선군공고 제2011-87호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안) 행정예고..... 54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고시 제2011-14호

구제역 2차 예방접종 실시 명령

정선군의 구제역 예방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조기종식을 위해 소(한·육우, 젖소)에 대한 2차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11. 2. 9.

정 선 군 수

- 1. 목 적 : 구제역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
- 2. 지 역 : 정선군 전체
- 3. 대상가축 : 정선군 내 소(한·육우, 젖소)
- 4. 실시기간 : 2011.02.10 ~ 접종 완료시까지
- 6. 기타사항
 -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79호) 및 구제역 긴급 행동 지침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 구제역 백신접종관련 군수의 지시를 이행할 것
 - 검사당일 축주 농장내 대기 및 가축보정 등 검사에 적극 협조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정선군 농업축산과(☎033-560-2104)

정선군공고 제2011-62호

2010년도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에 따라 2010년도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 1. 31.

정 선 군 수

- 공고기간 : 2011. 2. 1. ~ 2011. 4.30.(3개월)
- 공고대상 법인
 - 강원랜드복지재단,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 문의전화 : 560-2170, 560-2933

붙임 사회복지 법인(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기관(시설)명 : 사회복지법인 강원랜드복지재단
- 기 간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기관(시설)장, 담당자: 기관장: 000/ 담당자: 000(☎590-5903/Fax 590-5910)
- 후원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1171-**-***** 강원랜드복지재단

(단위 : 원)

구분	수입	지출	잔액	비고
계	4,002,510,000	4,002,510,000	0	
후원금	4,002,510,000	4,002,510,000	0	
후원품	0	0	0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영수증번호	비고
계				4,002,510,000		
2010-01-07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500,000	10-001	
2010-01-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40,000	10-012	
2010-02-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5	
2010-02-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4	
2010-02-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30,000	10-007	
2010-02-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8	
2010-02-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9	
2010-02-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10	
2010-02-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11	
2010-02-22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40,000	10-012	
2010-03-18	민간단체보조금품	강원랜드	일반사업비	4,000,000,000	10-002	
2010-03-18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6	
2010-03-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6	
2010-03-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5	
2010-03-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4	
2010-03-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30,000	10-007	

2010-03-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8	
2010-03-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9	
2010-03-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10	
2010-03-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11	
2010-03-23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40,000	10-012	
2010-04-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0	10-003	
2010-04-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40,000	10-012	
2010-04-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6	
2010-04-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5	
2010-04-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4	
2010-04-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30,000	10-007	
2010-04-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8	
2010-04-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9	
2010-04-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10	
2010-04-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11	
2010-05-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6	
2010-05-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5	
2010-05-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4	
2010-05-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30,000	10-007	
2010-05-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8	
2010-05-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9	
2010-05-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10	
2010-05-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11	
2010-05-3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40,000	10-012	
2010-06-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6	
2010-06-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5	
2010-06-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4	
2010-06-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30,000	10-007	
2010-06-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8	
2010-06-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9	

2010-06-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10	
2010-06-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11	
2010-06-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40,000	10-012	
2010-07-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40,000	10-012	
2010-07-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6	
2010-07-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5	
2010-07-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4	
2010-07-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30,000	10-007	
2010-07-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8	
2010-07-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9	
2010-07-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10	
2010-07-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11	
2010-08-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6	
2010-08-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5	
2010-08-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4	
2010-08-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30,000	10-007	
2010-08-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8	
2010-08-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9	
2010-08-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10	
2010-08-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11	
2010-08-23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40,000	10-012	
2010-09-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6	
2010-09-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5	
2010-09-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4	
2010-09-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30,000	10-007	
2010-09-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8	
2010-09-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9	
2010-09-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10	
2010-09-20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11	
2010-09-24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40,000	10-012	

2010-10-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6	
2010-10-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5	
2010-10-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4	
2010-10-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30,000	10-007	
2010-10-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8	
2010-10-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9	
2010-10-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10	
2010-10-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11	
2010-10-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40,000	10-012	
2010-11-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6	
2010-11-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5	
2010-11-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4	
2010-11-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30,000	10-007	
2010-11-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8	
2010-11-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9	
2010-11-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10	
2010-11-19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11	
2010-11-22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40,000	10-012	
2010-12-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6	
2010-12-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5	
2010-12-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04	
2010-12-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30,000	10-007	
2010-12-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8	
2010-12-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09	
2010-12-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10,000	10-010	
2010-12-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20,000	10-011	
2010-12-21	지역사회후원금품	○○○	지정(후원결연사업비)	40,000	10-012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산출기준	영수증번호
계		4,002,510,000		
2010-01-05	폐광지역진폐사업	970,000		10-002
2010-01-07	행복일자리사업	231,000		10-002
2010-01-20	행복일자리사업	108,000		10-002
2010-01-21	행복일자리사업	98,000		10-002
2010-01-25	후원결연사업	40,000		10-012
2010-02-01	방문복지사업	300,000		10-002
2010-02-04	폐광지역진폐사업	9,836,000		10-002
2010-02-04	방문복지사업	35,228,000		10-002
2010-02-19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1,443,410		10-002
2010-02-19	행복일자리사업	96,000		10-002
2010-02-25	방문복지사업	300,000		10-002
2010-02-25	후원결연사업	40,000		10-012
2010-02-26	방문복지사업	30,932,500		10-002
2010-03-02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31,474,360		10-002
2010-03-03	폐광지역진폐사업	7,432,000		10-002
2010-03-04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574,850		10-002
2010-03-05	폐광지역진폐사업	430,100		10-002
2010-03-05	후원결연사업	500,000		10-001
2010-03-10	이동진료사업	54,500,000		10-002
2010-03-10	행복일자리사업	32,540,000		10-002
2010-03-18	후원결연사업	130,000		10-004~011
2010-03-19	폐광지역진폐사업	7,664,000		10-002
2010-03-19	이동진료사업	2,750,000		10-002
2010-03-23	이동진료사업	1,015,000		10-002
2010-03-24	방문복지사업	300,000		10-002
2010-03-24	희망의집수리사업	5,841,000		10-002
2010-03-24	후원결연사업	170,000		10-004~011

2010-03-26	행복일자리사업	63,030		10-002
2010-03-30	이동진료사업	241,800		10-002
2010-03-31	이동진료사업	110,000		10-002
2010-03-31	방문복지사업	33,871,000		10-002
2010-04-06	이동진료사업	542,980		10-002
2010-04-07	폐광지역진폐사업	2,298,000		10-002
2010-04-09	폐광지역진폐사업	400,000		10-002
2010-04-09	이동진료사업	308,000		10-002
2010-04-12	사회복지인교육지원사업	60,000,000		10-002
2010-04-13	폐광지역진폐사업	2,900,000		10-002
2010-04-13	이동진료사업	2,800,000		10-002
2010-04-20	행복일자리사업	233,500		10-002
2010-04-21	폐광지역진폐사업	7,854,000		10-002
2010-04-22	방문복지사업	1,383,000		10-002
2010-04-22	후원결연사업	170,000		10-004~011
2010-04-27	방문복지사업	300,000		10-002
2010-04-28	이동진료사업	12,471,000		10-002
2010-04-30	방문복지사업	35,696,000		10-002
2010-04-30	행복일자리사업	180,000		10-002
2010-05-03	이동진료사업	6,790,470		10-002
2010-05-03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1,584,350		10-002
2010-05-03	행복일자리사업	177,710,000		10-002
2010-05-07	폐광지역진폐사업	47,600,000		10-002
2010-05-07	이동진료사업	6,127,000		10-002
2010-05-18	폐광지역진폐사업	4,397,000		10-002
2010-05-18	이동진료사업	6,325,330		10-002
2010-05-20	이동진료사업	6,577,000		10-002
2010-05-24	이동진료사업	18,000,000		10-002
2010-05-24	행복일자리사업	59,000		10-002
2010-05-24	후원결연사업	170,000		10-004~011

2010-05-26	이동진료사업	3,565,000		10-002
2010-05-28	폐광지역진폐사업	2,000,000		10-002
2010-05-28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148,430,000		10-002
2010-05-31	이동진료사업	16,671,600		10-002
2010-05-31	방문복지사업	42,669,500		10-002
2010-05-31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143,500		10-002
2010-06-03	폐광지역진폐사업	507,000		10-002
2010-06-03	이동진료사업	8,000		10-002
2010-06-04	폐광지역진폐사업	3,739,000		10-002
2010-06-04	이동진료사업	3,201,000		10-002
2010-06-08	이동진료사업	430,800		10-002
2010-06-14	이동진료사업	2,963,000		10-002
2010-06-15	폐광지역진폐사업	85,592,000		10-002
2010-06-15	희망의집수리사업	14,186,000		10-002
2010-06-15	행복일자리사업	89,000		10-002
2010-06-17	폐광지역진폐사업	2,628,000		10-002
2010-06-17	희망의집수리사업	3,000,000		10-002
2010-06-21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1,252,800		10-002
2010-06-22	이동진료사업	3,966,000		10-002
2010-06-22	사회복지인교육지원사업	5,797,300		10-002
2010-06-22	후원결연사업	170,000		10-004~011
2010-06-25	폐광지역진폐사업	908,000		10-002
2010-06-25	방문복지사업	300,000		10-002
2010-06-25	희망의집수리사업	11,000,000		10-002
2010-06-25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225,510,000		10-002
2010-06-28	이동진료사업	102,400		10-002
2010-06-30	폐광지역진폐사업	107,334,000		10-002
2010-06-30	이동진료사업	120,588,500		10-002
2010-06-30	방문복지사업	44,970,000		10-002
2010-06-30	희망의집수리사업	71,595,000		10-002

2010-06-30	사회복지인교육지원사업	29,839,320		10-002
2010-07-07	이동진료사업	1,498,700		10-002
2010-07-08	이동진료사업	100,000		10-002
2010-07-08	행복일자리사업	147,000		10-002
2010-07-12	이동진료사업	1,259,900		10-002
2010-07-12	방문복지사업	20,592,480		10-002
2010-07-13	폐광지역진폐사업	10,000,000		10-002
2010-07-16	이동진료사업	8,178,450		10-002
2010-07-16	사회복지인교육지원사업	600,000		10-002
2010-07-19	이동진료사업	7,806,000		10-002
2010-07-21	후원결연사업	170,000		10-004~011
2010-07-26	이동진료사업	4,838,900		10-002
2010-07-26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534,700		10-002
2010-07-30	폐광지역진폐사업	3,280,000		10-002
2010-07-30	방문복지사업	64,574,500		10-002
2010-07-30	사회복지인교육지원사업	7,372,450		10-002
2010-08-02	이동진료사업	11,469,000		10-002
2010-08-02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16,769,500		10-002
2010-08-06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301,000		10-002
2010-08-09	폐광지역진폐사업	1,505,000		10-002
2010-08-09	이동진료사업	3,681,000		10-002
2010-08-09	사회복지인교육지원사업	42,128,000		10-002
2010-08-13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12,213,000		10-002
2010-08-19	폐광지역진폐사업	75,000,000		10-002
2010-08-19	이동진료사업	2,000,000		10-002
2010-08-25	이동진료사업	369,000		10-002
2010-08-25	방문복지사업	300,000		10-002
2010-08-25	후원결연사업	170,000		10-004~011
2010-08-26	이동진료사업	4,122,000		10-002
2010-08-26	희망의집수리사업	13,000,000		10-002

2010-08-30	방문복지사업	66,309,000		10-002
2010-09-03	폐광지역진폐사업	49,196,000		10-002
2010-09-03	이동진료사업	26,991,000		10-002
2010-09-07	이동진료사업	487,800		10-002
2010-09-08	이동진료사업	1,451,000		10-002
2010-09-08	희망의집수리사업	88,723,000		10-002
2010-09-10	폐광지역진폐사업	41,250,000		10-002
2010-09-10	희망의집수리사업	5,000,000		10-002
2010-09-13	폐광지역진폐사업	1,075,250		10-002
2010-09-15	이동진료사업	3,228,000		10-002
2010-09-16	폐광지역진폐사업	4,590,000		10-002
2010-09-17	폐광지역진폐사업	124,714,000		10-002
2010-09-17	희망의집수리사업	73,924,000		10-002
2010-09-28	이동진료사업	430,000		10-002
2010-09-28	방문복지사업	300,000		10-002
2010-09-30	폐광지역진폐사업	73,323,000		10-002
2010-09-30	이동진료사업	35,400,000		10-002
2010-09-30	방문복지사업	64,070,500		10-002
2010-09-30	희망의집수리사업	109,078,000		10-002
2010-09-30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45,180,000		10-002
2010-09-30	후원결연사업	170,000		10-004~011
2010-10-05	이동진료사업	7,531,170		10-002
2010-10-07	이동진료사업	362,300		10-002
2010-10-12	희망의집수리사업	8,250,000		10-002
2010-10-15	이동진료사업	187,000		10-002
2010-10-19	폐광지역진폐사업	3,445,000		10-002
2010-10-19	이동진료사업	60,225,500		10-002
2010-10-21	폐광지역진폐사업	8,827,000		10-002
2010-10-21	방문복지사업	300,000		10-002
2010-10-21	후원결연사업	170,000		10-004~011

2010-10-26	이동진료사업	23,907,000		10-002
2010-10-28	폐광지역진폐사업	3,614,000		10-002
2010-10-28	이동진료사업	92,075,500		10-002
2010-10-28	방문복지사업	68,429,000		10-002
2010-10-28	희망의집수리사업	95,568,000		10-002
2010-11-02	방문복지사업	1,782,490		10-002
2010-11-04	폐광지역진폐사업	2,410,000		10-002
2010-11-04	이동진료사업	10,759,500		10-002
2010-11-09	이동진료사업	469,500		10-002
2010-11-10	이동진료사업	9,402,220		10-002
2010-11-11	이동진료사업	2,815,000		10-002
2010-11-11	희망의집수리사업	4,390,000		10-002
2010-11-17	이동진료사업	15,735,500		10-002
2010-11-19	폐광지역진폐사업	2,000,000		10-002
2010-11-19	이동진료사업	1,703,000		10-002
2010-11-25	이동진료사업	95,000		10-002
2010-11-25	방문복지사업	321,130		10-002
2010-11-26	폐광지역진폐사업	51,485,040		10-002
2010-11-26	방문복지사업	300,000		10-002
2010-11-26	후원결연사업	170,000		10-004~011
2010-11-29	폐광지역진폐사업	58,646,000		10-002
2010-11-29	이동진료사업	14,040,000		10-002
2010-11-30	방문복지사업	67,424,500		10-002
2010-11-30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108,500,000		10-002
2010-12-01	폐광지역진폐사업	82,845,000		10-002
2010-12-01	폐광지역진폐사업	3,691,000		10-002
2010-12-03	이동진료사업	9,265,000		10-002
2010-12-07	이동진료사업	7,274,000		10-002
2010-12-07	희망의집수리사업	17,021,000		10-002
2010-12-09	폐광지역진폐사업	114,237,220		10-002

2010-12-09	이동진료사업	43,966,000		10-002
2010-12-09	방문복지사업	6,953,000		10-002
2010-12-21	이동진료사업	24,212,000		10-002
2010-12-21	방문복지사업	22,100,000		10-002
2010-12-21	희망의집수리사업	52,182,000		10-002
2010-12-23	폐광지역진폐사업	21,162,000		10-002
2010-12-23	이동진료사업	21,388,200		10-002
2010-12-23	방문복지사업	400,000		10-002
2010-12-23	희망의집수리사업	27,194,000		10-002
2010-12-23	후원결연사업	170,000		10-004~011
2010-12-27	방문복지사업	300,000		10-002
2010-12-28	폐광지역진폐사업	5,000,000		10-002
2010-12-28	방문복지사업	70,746,500		10-002
2010-12-28	후원결연사업	100,000		10-003
2010-12-31	방문복지사업	2,828,200		10-002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기관(시설)명 :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 기 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 월 일	후원금의 종류	후 원 자	내 역	금 액	비 고
계				5,013,000	
10. 01. 19	기타 후원금	○○○	지정	7,000	
10. 02. 19	"	○○○	"	7,000	
10. 02. 22	"	○○○	비지정	20,000	
10. 03. 19	"	○○○	지정	7,000	
10. 03. 23	"	○○○	비지정	20,000	
10. 04. 19	"	○○○	지정	7,000	
10. 04. 22	"	○○○	비지정	20,000	
10. 05. 19	"	○○○	지정	7,000	
10. 05. 24	"	○○○	비지정	20,000	
10. 06. 21	"	○○○	지정	7,000	
10. 06. 21	"	○○○	비지정	20,000	
10. 07. 19	"	○○○	지정	7,000	
10. 07. 22	"	○○○	비지정	20,000	
10. 08. 19	"	○○○	지정	7,000	
10. 08. 23	"	○○○	비지정	20,000	
10. 09. 14	"	○○○	비지정	4,500,000	
10. 09. 20	"	○○○	지정	7,000	
10. 09. 24	"	○○○	비지정	20,000	
10. 11. 01	"	○○○	비지정	20,000	
10. 11. 22	"	○○○	비지정	20,000	
10. 12. 22	"	○○○	비지정	20,000	
10. 12. 30	"	○○○	비지정	200,000	
10. 12. 30	"	○○○	비지정	30,000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물품의 종류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비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 액	산 출 기 준	비 고
계		106,000		
2.25	관내 기초수급자 (○○○님) 쌀지원	43,000	금43,000원 = 금43,000원(쌀20kg)*1포	
12.30	○○○씨 본인부담금 납부	63,000	○○○씨 후원금(1월~9월)-지정후원 산골마을취약대상토탈케어 본인부담금 금63,000원 = 7,000원 * 9개월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량	단위	비고

5. 후원금 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 좌 번 호	계 좌 명 의
농협	225-**-*****	정선군 사회복지협의

정선군공고 제2011-63호

2011.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지원계획 공고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농업·농촌 발전 안정기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1.
정 선 군 수

1. 지원규모 : 9,080백만원(군 전체)
2. 지원대상 : 군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단체 등
3. 지원대상 사업
 - 가. 중앙 농림지원사업 외 사업
 - 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육성사업
 - 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 특화품목(한우) 입식사업(2011.신규축사시설 우선지원)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2천만원, 단체 5천만원 이내
5. 용자조건 : 연리 2.0%,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6. 지원신청방법

지원 대상사업	지원규모 (백만원)	신청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비고
지역 특화품목(한우) 입식사업	3,400	2011.2.1-3.10	읍·면사무소	사업신청서 용자신청서	
중앙 농림지원사업 외 사업	5,680	연 중	지역농·축협		
소득증대를 위한지역특화육성사업					

*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2012년까지 지역농·축협과 협약 체결에 의하여 일부 기금을 운용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농업축산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그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 33조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2. 07.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1. 02. 07 ~ 2011. 02.21(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정선군청 세무회계과(033-560-2293)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압 류 물 건	총체납액	반송사유	비고
정연국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455-3 ,455-8	617,690	폐문부재	
김태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63-44	1,158,710	주소불명	
정해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173-1	2,746,560	이사감	
장태식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정선군 남면 유평리 296	6,322,750	폐문부재	
이선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16	1,587,390	수취인불명	

정선군공고 제2011-69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2. 9.

정 선 군 수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

가. 보호구역명 : 『정선군전통상업보존구역』

나. 전통시장 : 3개소(정선시장, 고한시장, 사북시장)

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위치 및 면적

- 범 위 : 도면 참조(바깥 붉은선 안쪽/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

- 위 치 : 붙임도면 참조

- 면 적 : 2,795,027㎡(정선읍 950,573㎡, 고한읍 987,573㎡, 사북읍 856,881㎡)

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목적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정선군 지역경제 및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열람장소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내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서면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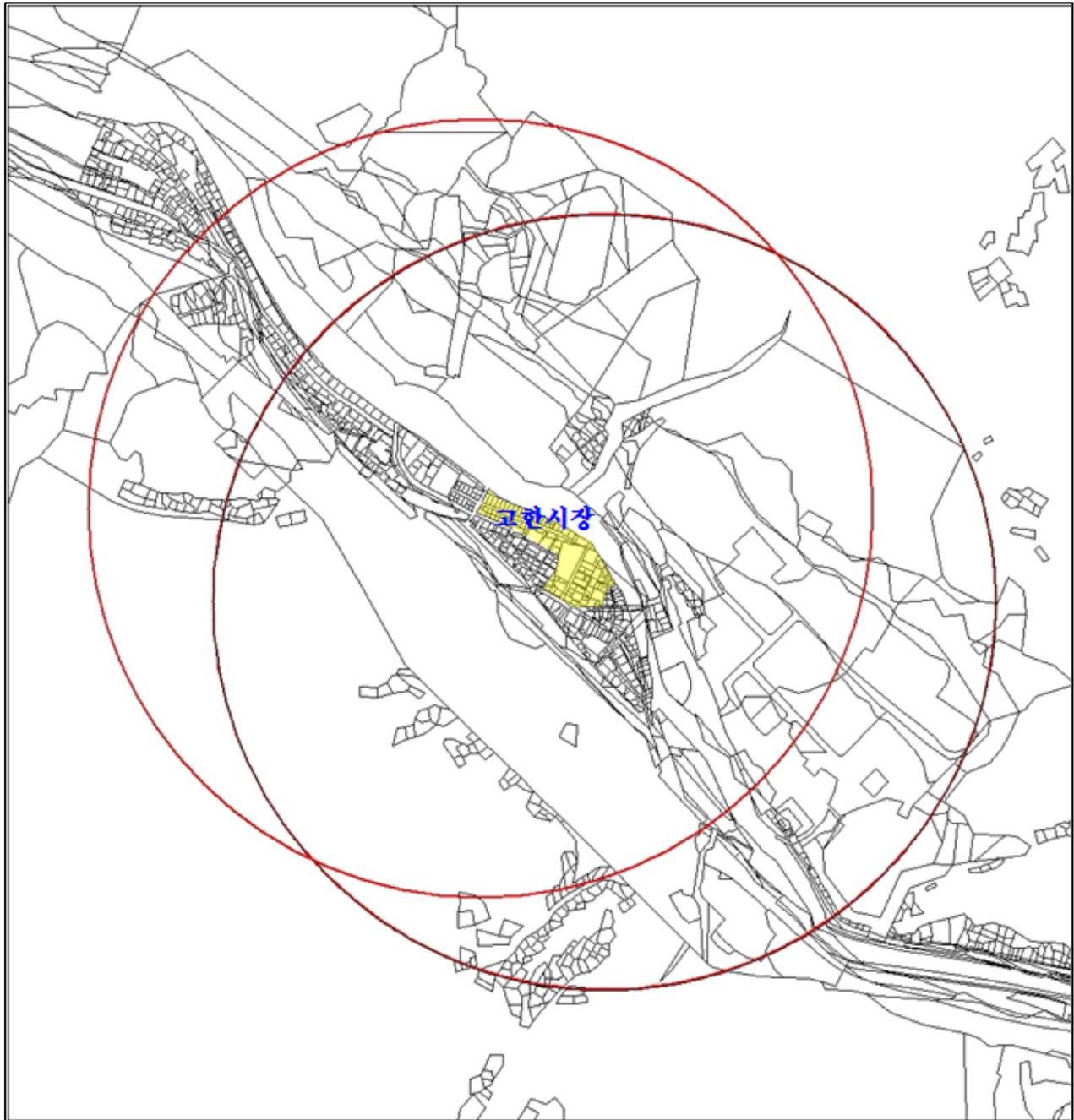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지역경제과(☎560-23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도면(정선읍) : 950,573^m²



(정선시장 경계 : 봉양리344-14번지, 봉양리 349-10번지)

□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도면(고한읍) : 987,573^m²



(고한시장 경계 : 고한리 62-243번지, 고한리 62-128번지)

□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도면(사북읍) : 856,881 m²



(사북시장 경계 : 사북리 366-44번지, 사북리 366-117번지)

정선군공고 제2011-74호

2011국내 전시(박람회)회 개별참가 지원계획

국내 개최 전시(박람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도내 중소기업(25개 기업이내)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지원대상 : 2011년도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박람회)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업체당 15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전시회 종료후 15일 이내 신청시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2011.2.14(월) ~ 3.4(금)(3.4일 18:00까지 도착분만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우220-736)
- 신청서류 : 참가지원신청서(별첨), 박람회 참가 신청서 사본 1부, 제품 홍보물 1부,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각종 인증서 사본
- 선정방법 :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 선정제외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동일박람회로 타 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이외 경우
- 휴업, 폐업중인 경우

- 결과통보 : 3. 10(목)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업체별 개별 통보

- 문의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033-749-3316)

2011. 2. 14.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정선군공고 제2011-75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적발통보, 고지, 독촉,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사전통지), “도로교통법” 제161조, 동법시행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2. 10.

정 선 군 수

1.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 독촉,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1. 02. 10 ~ 2011. 02. 24(15일간)
4. 공고내용 : 상기 과태료부과 대상자 및 납부의무자는 공고기간 내 과태료 납부 및 의견제출등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의견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 및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가산금등에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이의신청 제출처 : Fax) 033-560-2174,

☆ 우편: 233-87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2011년 1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위반일자	반송사유	반송구분	성명	위반장소	반송된 주소
2010-07-03	이사감	압류통지서	김미란	사북우체국앞 사거리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17 - 50 11/4
2010-07-04	이사감	압류통지서	강혜정	사북우체국앞 사거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492 - 8 1/3
2010-07-05	이사감	압류통지서	강혜정	사북우체국앞 사거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492 - 8 1/3
2010-07-07	이사감	압류통지서	강혜정	사북우체국앞 사거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492 - 8 1/3
2010-07-13	이사감	압류통지서	강혜정	사북우체국앞 사거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492 - 8 1/3
2010-07-17	이사감	압류통지서	강혜정	사북우체국앞 사거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492 - 8 1/3
2010-07-28	이사감	압류통지서	송진아	사북우체국앞 사거리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62 - 16 3/1
2010-07-31	이사감	압류통지서	강혜정	사북우체국앞 사거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492 - 8 1/3
2010-11-19	이사감	고지서	(주)두원자동차상사(상품용)	사북신교위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81 - 34 21
2010-12-16	수취인 불명	고지서	유결	수현전당사앞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70 - 11 26/
2010-12-16	수취인 불명	고지서	장병일(상품용 07.3.20) 폐업	사북로터리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송천동2가 38 - 2 (삼원자동차매매상사:상품용)
2010-12-16	이사감	고지서	윤진수	수정당구장앞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2번지 32호 3통 1반
2010-12-21	이사감	고지서	조화선	어부횃집건너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41 - 1 18/3
2010-12-21	수취인 불명	고지서	이정수	거북이건너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185 - 1 15/5 201호
2010-12-22	수취인 불명	고지서	주-디지털프 로바이드	크로바전당사앞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65 - 7 만제빌딩 1층 104
2010-12-23	이사감	고지서	이문건	스타전당사건너편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155 - 77 2/
2010-12-24	수취인 불명	고지서	해명개발(주)	유명약국옆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515
2010-12-28	이사감	고지서	김미란	로타리전당사앞 로 타리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17 - 50 11/4
2010-12-30	수취인 불명	고지서	고은영	사북로터리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12 43/19 덕소아이파크 111동 903호
2010-12-16	수취인 불명	고지서	김완섭	사북신협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555 26/6
2010-12-17	수취인 불명	고지서	이동욱	사북신협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47 - 33 4/6

2010-12-17	수취인 불명	고지서	박성영	사북읍사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78 - 1 2/2
2010-12-18	수취인 불명	고지서	김연용외1 (김연경)	사북신협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1755 50/4 스카이빌 404호
2010-12-19	수취인 불명	고지서	박성영	사북읍사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78 - 1 2/2
2010-12-22	수취인 불명	고지서	서종남	사북신협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88 - 6 1/1
2010-12-22	수취인 불명	고지서	해명개발(주)	사북우체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515
2010-12-25	수취인 불명	고지서	박성영	사북읍사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78 - 1 2/2
2010-12-25	우편함 투여	고지서	이규서	사북읍사무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35 18/7 주공아파트 858동 403호
2010-12-26	수취인 불명	고지서	주-디지텍프 로바이드	사북우체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65 - 7 만재빌딩 1층 104
2010-12-26	이사감	고지서	(주)디앤에프	사북우체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52 - 3 강성빌딩-301
2010-12-31	장기간 방치	고지서	김현	사북신협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1040 - 1 35/6 부곡아파트 10동 306호
2011-01-02	장기간 방치	적발통보서	안 영 철	사북우체국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644 5/8 무실주공4단지아파트 409동 1904호
2011-01-02	이사감	적발통보서	(유)코리아자 동차매매상 사	사북신협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여의동 850 - 4 한일자동차매매단지 2-207(상품용)
2011-01-04	주소불 명	적발통보서	김성민	신한은행앞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64 - 1 17/5 인정빌라 지하 301호
2011-01-04	이사감	적발통보서	김미란	사북로터리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17 - 50 11/4
2011-01-04	수취인 불명	적발통보서	(주)진렌트 카	사북신협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2 - 2 세신인창종합상가 비108호
2011-01-05	이사감	적발통보서	박옥희	사북로터리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의리 1187 - 5 3/현대빌라 나동 201호
2011-01-08	우편함 투여	적발통보서	노준례	사북신협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 - 1 3/현우기숙사 911호
2011-01-09	이사감	적발통보서	(주)신광중고 자동차매매 상사	사북읍사무소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1093 - 9
2011-01-09	이사감	적발통보서	합명회사예 산종합개발	최약국앞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50 - 50 201호

정선군공고 제2011-76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합자회사혜성건설 외 130건
- 주소또는거소 : “별첨”(정선군청 홈페이지 참조)
- 서류의 명칭 : 2011년도 지방세 납세고지서
- 서류의 내용 : 2011년도 지방세 납세고지서(2011년 1월)

위의 서류를 2011년 1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일인 2011년 02월 28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2. 11.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11-80호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2. 11.

정 선 군 수

- 1. 조 례 명 :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 2. 개정취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지급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
- 나.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대상 신설
(안 제2조제1항제4호)
- 다.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 정비
- 라. 포상금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8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7)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한다.

-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8조제2항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한다.

별지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담 당 확 인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서 번호	세목	징수액	주소	성명				

※ 1.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 과 자 (제보자)			세목	구분	발 굴 세 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담 당 확 인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 1.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3호 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과년도 채납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은닉 세 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상기 금액을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 첨부 : 1.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정선군수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기본법

제68조(징수촉탁)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한다.

제67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한을 경과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환여부를 결정하여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선군공고 제2011-81호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2. 11.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취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조성 재원(안 제3조)
- 나.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다. 기금의 관리·운용(안 5조)
- 라. 기금의 운용 심의(안 제6조)
- 마. 기금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7조)
- 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7)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정선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정선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정선군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정선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세무회계과장
- 2. 기금출납원: 세정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27]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3.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정선군공고 제2011-84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당해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분묘수	비고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105	임	2기	

2. 개장사유 : 에코랜드 조성사업 쉼터이여 시설부지 편입

3. 개장방법

- o.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후 개장
- o.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이전장소

- o.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하늘공원)
- o. 화장후 납골당 안치

5. 공고기간 :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3개월

6. 신 고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녹색환경과(☎033-560-2346)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1. 2. 15.

정 선 군 수

지 장 물 현 황

지장물 명	묘지	지장물 종별	수량·규격	비고
		墓	2기	이장
지장물소재지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105번지		성명	

위 치 도

전 경



무 연 분 묘 확 인 서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광하리 일원에 추진하는 군립공원조성사업 시설계획 부지에 안치되어 있는 다음 분묘는 무연분묘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분묘의 소재지	지번	분묘수	비 고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105번지	2기	★ 비석 비문 1기 : 장흥고씨 고흥집의묘 1기 : 경주이씨의 묘

2011. 2. // .

확인자 : 정선군 정선읍 북실 3리 리장 고영환 (인)
 정선군 정선읍 북실3리 3반 반장 최명자 (인)
 지역주민(부지 경작자) 이영재 (인)
 지역주민(舊 리장) 이창원 (인)

의 견 내 용
반대 부러 알지 못하는 묘지임 (이영재)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공고 제2011-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에코랜드 조성 짚와이어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주소·거소·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요재결 신청코자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2. 15.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짚와이어” 자연체험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105번지
-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2. 공고내용

- 협의기간 : 2011. 2. 15 ~ 2011. 3. 14(30일)
- 협의방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협의
- 보상금 산정 및 지급절차
 - 보상금은 2개 이상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협의완료(소유권이전)후 전액 현금보상
- 보상계약 체결장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녹색환경과 담당자 (본관 3층 033-560-2346)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3통(일반용2통, 부동산매도용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통장사본, 인감도장

3. 공시송달 대상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105	임	8,529	일부 전	정선읍 용탄리 25	고용균 (없음)			

4. 공고기간 : 2011. 2. 15 ~ 2011. 3. 2(초일불산입 14일)

5.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86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원」 모집 공고

2011년도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재능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1. 2. 15.

정 선 군 수

1. 모집부문 및 인원

- 40명(비상임 단원)
- 아리랑극 : 18명 - 소리부분 : 22명

2. 응모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제출서류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원 모집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정선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출력 또는 관광문화과 교부
- 접수기간 : 2011. 2. 17(목) ~ 2. 23(수) 09:00~18:00(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5. 전형일시 및 장소

- 전형일시 : 2011. 2. 28(월) 13:00 ~
 - ⇒ 소리 : 13:00 ~ 15:30(2시간 30분)
 - ⇒ 극 : 15:30 ~ 18:00(2시간 30분)
- ※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변경 시 개별 통보
- 전형장소 : 정선군 문화예술회관(3층)

6. 전형방법

- 실기전형(면접병행)

7. 심가기준 및 배점

○ 심사기준

- 정선아리랑 가창능력
- 연기분야 소질 및 발전 가능성
- 아리랑관련 이론, 참가의지 등

○ 배 점

- 소 리 : 음정, 박자, 감정, 개인기, 무대매너(면접) ⇨ 각 20점
- 연 기 : 대사, 연기, 감정, 개인기, 무대매너(면접) ⇨ 각 20점
- ※ 정선아리랑 긴아리랑, 자진아리랑, 엮음아리랑 각 2곡씩
가창하되, 개인기는 제한 없음
- ※ 연기는 첨부된 대본 및 당일배부 대본을 바탕으로 연기하되,
개인기는 제한 없음(전문 연극인 우대)

8. 합격자 발표

- 2011. 3. 3(개별통보)

9. 기 타

- 응시자는 전형 당일에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형시간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접수처(560-25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비상임단원 응시원서

응시분야	① 극 / ② 소리	응시번호		사 진 (반명합판) 3×4Cm
주 소	(전화) (H.P)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학 력	년 월 일	초등학교		
	년 월 일	중학교		
	년 월 일	대학교	과	년
	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주요경력	종 사 기 간	근 무 처	직	위
특기 및 소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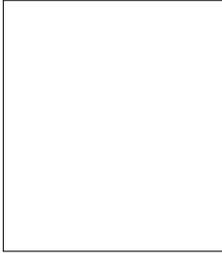
본인은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비상임단원 전형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2 월 일

응시자 : (인 또는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

응 시 표				
사 진 (반명합판) (3×4cm)	응시분야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2011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사진>

자기소개서

성명 . _____
 휴대폰 . _____
 E-mail . _____

1. 성장과정

2. 장-단점 및 특기

3. 지원동기

4. 향후계획

2011년 월 일 작성자 :

【2011년 정선아리랑극 오디션 대본】

#AD 1950년-어느 봄날, 정선...

(백성들이 아리랑 고개 너머로 아리랑을 부르며 등장한다.)

백성들: (자진아라리)

“삼십육년간 피지 못하던 무궁화꽃은 폼건만 대한민국 남북통일은 언제나 오나”
“원수로구나 원수로구나 철천지 원수로구나 악마같은 삼팔선이 원수로구나”
“아리랑 고개는 아름다운 고개 상생과 평화로 넘어가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백성 1: 산나물 마이덜 뜯으셨소?

백성 2: 올 봄은 뭘 조환지 모르겠소.

백성 3: 오시라는 봄비는 오지 않고...

백성 4: 찌는 땀별에 모단 거이 싹다 타들어가고 있으이...

(천둥소리)

백성 5: 마른하늘에 뭘 날베락 소리만 저리 요란하데요...

백성 7: 해방된 지 올때나 됐다고 나라에 또 뭘 변고가 있을라나...

백성 6: 올 같은 흥년, 또 우태 봄 살아날라나...

백성 3: 지천으로 깔랬던 산나물 보기가 호랭이 만나기보다 더 어려우이...

백성 4: 왜서, 호랭이 보미는 보쌈이래도 부탁할라고...?

백성 3: 나비 없는 강산에 꽃은 피어 뭇 하미...

다같이: (레시타티브-아라리 곡조로)

“임 없는 이 강산에 나물은 뜯어 뭇할고...”

“논두렁 꽃이나 밭두렁 꽃이나 꽃은 매일반이요 오다가다 만난임도 임은 임일세”

“호박은 늙으면 단맛이나 나지 사람이 늙어만지니 단맛도 없네”

“짐승의 괴물은 고슴도치 아닌가 사람의 괴물은 늙은 영감이여...”

백성 4: 지지바가 못난 것은야 젓통만이 크다더니 아, 이 간나들이 뉘길 영감태이를 만들고 자빠졌나?

백성 7: 머스마가 못난 것은야 대갈통만 크다더니 기차 화통 삶아먹었소, 귀떼기 떨어지겠네...!

백성들: (웃는다)

(천둥소리)

백성 9: 근데 요상한 소문이 있다이.

백성 8: 소문이라니요?

백성 9: 시방 아랫마을로 대처서 사람덜이 몰려오고 있다데...

백성 2: 왜서...?

백성 9: 글씨, 뭐이라든가 우덜 선산을 파내 뭇 개발을 한다고 하데...

백성 3: 선산이라면 아리랑고개 말이래요?

백성 2: 우덜 후레 자석이 그 따구 헛소리를 씨버리고 있나.

백성 1: 어데서 들었나?

백성 9: 글씨 그기, 그래니깐두루 저 오미가미 바람질에...

백성 1: 당치도 앓는 말 더 이상 전하지 마래. 저 아리랑 고개 함부로 밟고 파헤칠 수 있는 곳이 아이여. 고려 말엔...

백성 3: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불사이군의 충절로 아라리 부르미 넘어가신 고려 충신들의 고개요.

백성들: 조선말엔...

백성 4: 부당한 수탈에 항거하고자 동학으로 일어난 농민들이 아리랑 부르미 넘어간 고개요.

백성들: 왜정 땀...

백성 5: 일제의 총칼을 피해 아리랑 부르미 넘어간 한 많은 고개구.

백성들: 시방은...

백성 6: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네 언젠가 다시 하나로 뭉쳐 마커 어깨동무하고 넘어 가야 할 상생과 평화의 고개 아이래요.

백성들: 고름, 그루구 말구지...!

백성 7: 근데요, 지 어릴 적부터 아리랑고개에 대해서 귀뎀기에 못이 백히도록 들었는데요... 저 가봐도 아리랑고개 없던데요...?

백성 1: (가슴에 손을 얹으며) 여 있잖나.

백성 7: 여라구요...?

백성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으며) 고름 여 있잖나.

백성 2: 우덜 땀 속서 질루 소중한고, 질루 귀하고, 질루 바래는 거이 아리랑이고 아라리잖나. 또 거가 아리랑고개잖나.

백성 1: 우덜은 아리랑으로 이 땅을 지키미 살아온 농세꾼, 아라린 우덜 조상님들의 몸과 땀, 거가 아리랑이고 아리랑고개잖나.

백성들: 고름, 그루구 말구지...!

백성 7: 고통다구요...? (나간다)

백성 1: 잘 찾아보거래...

백성 3: 자, 개발이니 뭐이니 괜한 헛소문에 귀 어지럽히지 말고 아라리 한마디 하

미 내려가요. 엇그제 담근 강냉이막걸리가 꽤 맛이 들었을 거래요.

백성 5: 안주는 지난 해 된장에 묻어든 더덕장아찌래요.

백성들: 더덕찌라, 벌써부터 군침이 돌잖소. 기왕이면 산돼지 껌기도 올리래요. 아, 거 좋구말구지...!

(아리랑고개를 찾으러 나갔던 처녀가 요상한 차림으로 변해 잔치마당으로 들어선다. 마을 사람들 처녀를 살피느라 어색하다.)

백성 1: 아리랑 고개 찾았나...?

처녀: 이기 아리랑 고개서 갖고 온 우스키라는 거잖어요. 인제 막걸리만 드시지 말고 가끔씩은 이런 어메리카 술도 먹어봐야 한다던데요.

백성들: (너나 할 거 없이 밥그릇, 바가지 등을 들고 줄을 서서는 술을 받아들여 거꾸거꾸 마시고는 묘하게 오만상을 표현한다)

백성 9: (앞으로 나서며) 우스키는 얼마든지 있으니까네 거꾸거꾸 먹으면서 귀뚜기만 잠시 빌렸으면 해요.

백성들: (황설수설)

백성 9: 저, 그래니깐두루... 저, 마카... (소리 지르며) 여 좀 봐요...!

백성들:?!

백성 9: 드디어 우덜 마을에 기쁜 소식이 당도했잖소.

백성 8: 요 어메리카 술 말고 더 기쁜 소식이 어딴데요?

처녀: (귓속말을 전한다)

백성들: (서로 귓속말을 전하며 놀란다)

백성 8: 고거이 참말이래...? 우덜 아리랑고개에 고론 귀한 거이 묻혀있다는 기...?

처녀: 달포 뒤면 개발이 시작된다던데요. 인제 개발에 동참하던 반대하던 선택하는 일만 남은 거라던데요.

백성 7: 그래, 이 참에 우덜도 한번 땡땡거리려봐야지.

백성 6: 언제꺼정 김치 한가지, 찐지 한가지만 먹고 살 수는 없다니.

백성 8: 고름, 보릿고개로 모다 죽어 가는 이 마당에 아리랑 고개가 뭘 대수라고...!

백성들: (반으로 갈리며) 고름, 낸 개발에 동참할 기구만...! 내도, 내도...

백성 1: 그만덜 허래.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꺾끗이 지켜온 아리랑 고개여.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아리랑 고개 꺾어 찢어대민 마을 전체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지도 모를 일... (천둥소리)

백성 8: 허면 전체헌티 의견을 물어봐요. 개발하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서시고 반대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서 봐요.

백성들: (서로의 눈치를 살핀다)

백성 8: 영감은 왜서 거 있소?

백성 2: 내 맘이여 왜?

백성 8: 그 말 진정이래요?

백성 2: 진정은 뭘 놈의 진정, 내 맘이라이까....?

백성 8: 허면 당장 내 놔요.

백성 2: 뭘 말이여?

백성 8: 작년에 꺾 간 쌀 반 가마이 당장 갚으란 말이래요.

백성 2: 이 사람 성질머리하곤 아 그쪽으로 가든 될 거 아이여. (슬금슬금 건너간다)

백성 8: 영감은 어제 집에 잘 드가셨데요?

백성 3: 이 마당에 그런 영양가 없는 질문은 왜하는가...?

백성 8: 궁금해서 그러잖어요? 영감이 어젯밤에 뉘기하고 어디서 뭘 했는지 영감 마 나님이 알아도 된데요?

백성 3: 아... 그쪽이 찬성하는 쪽이었나...? (또 옮겨간다)

백성들: (반대하는 사람들 쪽으로 다가선다)

백성 1: (막아서며) 그만들 하라니...! 그만들 물러서라니....! 수천년의 세월을 지켜 온 아리랑 고개여. 이렇게 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 않나...? (천둥소리)

백성 8: 사흘간의 여유를 주겠소. 그때꺼정 답이 없으면 찬성하는 거로 알고 마커 우리 모다가 나설 것이래요. (위스키병을 들어보이며) 인제부터 이기 우덜 아리랑이고 아라리래요. 자, 가자니요...!

(천둥소리 요란하게 들려오며 찬성하는 사람들이 몰려 나가고 반대하던 사람들 역시 나간다. 영상으로 ‘며칠 후...’ 자막이 뜬다. 뿔꾸기 소리만이 무심하게 들려오며 몇몇의 사람들이 아라리를 부르며 등장한다.)

백성들: (긴아라리)

“아리랑 고개 뿔꾸기는 평화로이 우는데 우리네 살림살이 왜 요다지 슬퍼”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 고갠데 우리네 언제 살어서 열두고개 다 넘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백성 5: 며칠 상간에 마을이 흥흥하다니요.

백성 6: 대처서 사람덜이 요로코롬 개떼처럼 마이 몰려오긴 처음이잖나?

백성 7: 시상은 벤하는 거니까네 뭐이던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에는 찬성을 한데요. 허지만서도 끝까지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한다고 봐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이마저 없어진다면...!

(순간 천둥소리 요란하게 울리며 세상을 깨운다.)

백성 4: (뛰어 들어오며) 큰일이래요...!

백성들: 또 뭘일이래...?

백성 4: 시방 전장이 났다니요.

백성 7: 전장이라니...?

백성 4: 저 짝 사람덜이 몰래 산을 파헤치다 우리 짝 사람덜헌티 들켜 큰 썸이 벌어 졌다니요.

(천둥소리)

백성 5: 곧 큰 비가 올 모양이래. 어여 가 말려야지 이러다 마을에 줄초상 난다이...!

#-한국전쟁

(천둥소리 요란하게 들려오며 마을사람들의 싸움이 벌어진다. 지게 등을 이용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싸움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몇몇의 사람들이 등장해 이들을 말한다.)

백성 5: 인자 그만 들 하시래요...! 큰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썸만 더 온대민 산사태는 물론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될 거래요.

백성들: 뭘이래....? (웅성거린다)

백성 1: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어여들 여길 피해야 한다이.

백성들: (웅성거린다)

백성 3: 이 책임은 저 짝 사람덜이 져야할 거래요. 쥐새끼 모양 야밤을 틈타 몰래 산을 파헤칠래다 이리 댘으이 말이래요...

백성 8: 뭘이 쥐새끼...? 다같이 살자고 한 우덜헌티 상은 못줄망정 먼저 싸움을 벌인 거이 느그덜 아이나?

백성 6: 시방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서 뭘 소용이 있는데요? 마을의 희생이 너무 크잖에요?

백성 7: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고 있잖에요. 지금이라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요. 여는 아리랑의 고향이고 우덜은 아리랑 백성이잖에요.

백성 3: 내 처와 자식이 저치들헌티 해를 당했어. 헌데 시방 아리랑은 뭘이고 거다 화해꺼정 하라고...?

백성들: (긴아라리)

“할미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대한 백성 슬픔이 아리랑 소리소리에 가득하구나”

“앞 남산의 호랑나비는 왕거미줄이 원수요 지방시대 청년들은 삼팔선이 원수다”

“공동묘지의 쇠스랑 귀신아 무얼 먹고사느냐 세상의 전쟁귀신은 왜 안잡아가나”

“사발 그릇이 깨여지며는 두세쪽이 나는데 삼팔선이 깨여지며는 한덩어리로 뭉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 나간다. 백성들의 아리랑은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영상으로 무녀의 모습이 보인다.)

무녀: (영상으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우릴 넘겨주게...!

(정선아리랑의 유장하고 힘찬 선율이 흐르며 새 희망이 솟아난다.)

-막-

정선군공고 제2011-87호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안) 행정예고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시설물의 안전 관리 및 운영상태의 감시, 화재예방 등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1. 2. 15.

정 선 군 수

1. 취지

최근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2배가량 높으며('06년 기준 : 일본163명, 독일136명, 한국 276명), 어린이가 외부위험에 노출되면서 유괴 실종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범죄예방 및 통제수단으로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 하고자, 행정예고를 통해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함.

2. 행정예고사항

가.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 계획(안)

연번	관리부서 (관리주체)	설치장소	비 고
1	건설도시과	고한읍 고한리(갈래초등학교)	생활방법
2	건설도시과	사북읍 사북리(사음초등학교)	생활방법
3	건설도시과	북평면 북평리(북평초등학교)	생활방법
4	건설도시과	신동읍 예미리(예미초등학교)	생활방법

나. 위치도

1) 갈래초교 후문 진입로



2) 사음초교 후문 진입로



3) 예미초교 후문 진입로



4) 북평초교 후문 진입로



3. 의견제출

가. 공고기간 : 2011년 02월 15일 ~ 2011년 03월 01일

나.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1년 03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건설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 반대 의견시 그 사유를 기재)
- 2)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행정예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우 233-804)
- 전화번호 : (033)560-2488 FAX) 033-560-2099

라. 위 의견제출 기간까지 제출 의견이 없을 경우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끝.